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10. 16 선고 2020가합83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20. 9. 11.

판결 선고 2020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할 금 800,000,00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하고, 소외 대한민국(소관: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정용석

판사김재연

판사임세준

별지